



Original Article

Married Women's Opinion of the Spouse's Punishment in Domestic Violence Cases

Lee Kyu-Eun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가정폭력에 대한 기혼여성의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

이 규 은¹⁾

1)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rent circumstances of violence against wives, and to identify the wife's opinion of the spouse's punishment in domestic violence cases. **Method:** The subjects were 216 married women in G province. Data was gathered from November 22 to December 6, 2004.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χ^2 -test using SPSS/Win 10.0 program. **Results:** About thirty six percent of the subjects had experience with domestic violence. There was a high prevalence of psychological aggression(68%), sexual coercion (36%), physical assault(31%), and injury(19%). The subjects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had a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spouse's punishment than subjects not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The more severe the domestic violence was, the more the battered women's positive attitude for criminal action increased. **Conclusion:** An educational program and public relations will increase women's empowerment to solve domestic violence. A more cooperative and integrative program for prevention and an intervention system against domestic violence should be developed

for women in battered situations.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Women, Punishment

서 론

가정폭력은 수많은 여성과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사회문제중의 하나이다(Jang & Kim, 2005).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다. UN 아동기금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여성의 20-50%가 가족에게 폭력을 당한다고 밝혔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매 맞는 여성의 비율이 38%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Kim, 2002). 가정폭력은 은밀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높은 스트레스, 공격성과 우울증 및 학습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며,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정서발달상 문제를 겪는율이 높고, 폭력의 학습으로 비행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간접피해의 문제(폭력의 악순환) 또한 심각하다(Kim, 2001). 그러나 유교적 전

투고일: 2006. 4. 11 1차심사완료일: 2006. 5. 2 2차심사완료일: 2006. 7. 9 3차심사완료일: 2006. 9. 5 최종심사완료일: 2006. 9. 8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Kyu-E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522. Naegok-dong, Gangneung city, Kangwondo 210-701, Korea.
Tel: 82-33-649-7617 Fax: 82-33-649-7620 E-mail: lke@kwandong.ac.kr

통이 강하여 남성의 통제를 자연스런 관습으로 인식해 온 한국에서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Hur & Huh, 2003)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과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방안의 하나로 1997년 12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 또는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률은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2005)의 조사에서 45.9%로 보고되어 KIC(1992)의 연구에서 28.4%, 1998년 Kim의 연구에서 나타난 31.4%로 보다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은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채 1%가 되지 않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폭력상황에 시달리는 고위험 피해자가 적어도 2% 이상으로 추산되고, 또한 폭력의 결과로 병원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는 비율이 6~%, 이중 2% 정도는 골절상을 입는 등의 심한 상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1% 미만의 신고율과 0.4% 이하의 사법 처리율은 현실에서 요구되는 심각한 위기 개입 상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Kim, 2001). 이와 같은 경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참고 지내기를 강요하며 가정폭력을 더욱 은폐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며(KIC, 1992),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미약하게 하여 피해자보호나 가해자 치료를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감소되지 않고 신고율도 낮은 이유는 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분위기와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가정내 폭력이 일반적 유형의 폭력과는 다르게 인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Kim, 1998). 많은 경우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은 폭력으로 인지되지 않고 허용되거나 관용된다. 일반폭력은 피해당사자나 사법기관에 의해 보다 민감하게 통제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일반인 외 형사사법기관도 포함되는 목격자 모두에게 있어 통제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덮어둘수록 좋은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또한 피해여성은 학습된 무력감에 의하여 폭력관계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되는데(Berry, 2000), 가부장적 사회체계에서 여성이 폭력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가족체계가 열릴 때이며 이는 외부로부터 대안적인 피드백 지원을 모색하고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Giles, 1983). 외부개입의 방법으로는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와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형태가 있는데 사적인 개입으로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친구의 개입을 들 수 있으나 이들은 피해자에게 단지 동조하거나 사정을 들어줄 뿐 확실한 대응방법을 제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Kim, 1996). 공식적인 사회적 개입으로 전문기관이나 의료체계, 경찰의 개입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경찰의 개입은 가정폭력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Suh & Kim, 2002). 그러나 실제로 많은 피해여성들이 배우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을 부른 여성들조차 '이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종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게 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60% 정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KIC, 1992). 이를 볼 때 일반폭력과 비교해서 가정폭력의 경우 처벌의사도 매우 낮고 실제로 처벌로 진행되는 경우는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Gondolf, 2002). 더욱이 죽음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우리의 가정폭력 현실에서 신고는 피해여성이 가지는 적극적인 도움 찾기의 수단이자 공식적 사회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 것이다(Jang & Kim, 2005).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여성과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피해여성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여성과 일반 대중에게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혼여성이 경험한 가정폭력의 수준과 가정폭력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구와 문제를 확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협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그룹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가정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가정폭력의 정도와 가정폭력 정도에 따른 기혼여성의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가정폭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4) 연구대상자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라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가정폭력실태 및 가정폭력에 대한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기간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6일 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G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216명 이었다.

3. 연구도구

1) 가정폭력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의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한국인에 알맞게 수정·!완한 Sohn(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그 갈등이 해결방법으로 사용되는 기제를 협상(negotiation),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성적 폭력(sexual coercion)으로 나누어 각각 6문항, 12문항, 8문항, 7문항으로 측정하고 이와 더불어 신체적 폭력의 결과를 측정하는 상해(injury) 6문항을 합하여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성적폭력에 관한 문항 중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2문항만을 사용하였고, 협상관련 6문항은 모두 제외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Sohn(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5였다.

2) 처벌의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처벌의도 측정도구는 CTS2의 28문항을 사용하여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형사소송 고려, 보호처분 고려, 민사책임 고려 및 이혼 고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도록 구성하였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의 결과, 결정으로써 내리는 처분이다. 민사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범죄로서 형벌을 가하는 형사책임과는 대립되는 말이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Kang et al., 2003).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의도를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 응답 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대상자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읽어주고 기록하게 하였다. 240부의 설문지 중 기제가 불완전하거나 미비하여 자료처리가 어려운 24부를 제외한 216부(90%)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정폭력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가정폭력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견해는 χ^2 -test를 하였다.
- 4)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 구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5~ 1세가 46.3%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35세에서 54세의 연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학력은 고졸 48.6%, 대학재학 이상이 26.4%였으며, 61.1%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혼기간이 21~ 5년인 대상자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301만 원 이상인 월수입을 가진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가정폭력실태

가정폭력경험을 조사한 결과 처음 폭력을 당한 시기는 결혼 1~ 3년 이내가 13.4%로 가장 많았고 결혼 5년 이내에 약 24%의 대상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사 횟수는 '결혼 후 한두 번 있었다' 18.1%, '기타' 11.1%, '일 년에 1~ 2회' 2.3%, '일 개월에 3~ 4회' 1.9%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폭력수준에 대해 다중응답하게 한 결과 '떠밀거나 미는 행동을 한다' 19.9%, '기타' 14.5%, '뺨을 때린다' 7.5%, '주먹, 발, 목을 누르는 등 자신의 신체로 폭행 한다' 5.4%, '흉기(혁명, 톱, 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6)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Age(years)	≤ 34	32	14.4
	35-44	100	46.3
	45-54	67	31.0
	55 ≤	18	8.3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10	4.6
	Middle school	27	12.5
	High school	105	48.6
	College	17	7.9
	University ≤	57	26.4
Job	Present	84	38.9
	Absent	132	61.1
Period of marriage (Years)	≤ 5	13	6.0
	6-10	43	19.9
	11-15	39	18.1
	16-20	37	17.1
	21-25	50	23.1
	26 ≤	32	14.8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 100	14	6.5
	101-150	22	10.2
	151-200	37	17.2
	201-250	38	17.7
	251-300	32	14.9
	301 ≤	62	28.8
	Others	10	4.7

등을 가지고 폭행한다'와 '계속 무차별로 때려눕힌다'가 각각 1.7%로 나타나 계속 무차별적으로 심한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8.8%에 이르렀다.

남편이 말하는 폭행이유를 다중응답하게 한 결과 '기타' 14.4%,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1.6%, '남편 일에 사사건건 참견한다는 이유로' 8.3%, '자신의 부모에 대해 불손했다는 이유로' 4.1%, '계으르고 살림을 못한다는 등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3.7%, '부인의 품행을 의심하는 이유로(의처증)' 2.9%,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이유로' 2.5%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폭행이유를 다중 응답하게 한 결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12.4%, '회사나 밖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10.2%, '열등감 때문에' 9.1%, '기타' 8.8%,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4%, '정신질환이나 성격이상으로' 4.0%, '외도, 간통 등

의 부정행각의 발각으로 인하여' 2.9%, '의처증 때문에' 1.8% '성관계를 거부하여' 1.5%로 나타나 남편이 내세우는 폭행이유와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폭행이유는 다소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음주상태에서의 폭력행사는 '아니다' 31.5%, '그렇다' 14.4%, '상관없다' 6.9%로 응답하였다. 폭행 후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는 '아니다' 39.4%, '가끔 그렇다' 10.6%, '항상 그렇다' 1.9%로 나타나 12.5%의 대상자가 가정폭력 후 성관계를 이용한 통제를 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남편의 폭력 시 본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나도 함께 폭력을 행사 한다' 15.3%, '무조건 자리를 피하고 본다' 12.0%, '기타' 10.6%, '폭력이 끝날 때 까지 맞으면서 참는다' 3.2%,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주위의 도움을 청 한다' 2.3%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기타 11.6%, 시댁식구 6.5%, 친정식구 5.1%, 주변의 아는 이웃 4.6%, 폭력을 당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 3.2%, 경찰 2.3%로 나타났다.

남편의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과 의논했었는지의 여부는 '아니오' 19.4%, '예' 16.7%로 나타났고, 남편의 폭행사실을 처음으로 의논한 때에 대해 폭행이 반복된 이후 11.1%, 첫 폭행 당시 6.5%로 응답하였다. 또한 남편의 폭행사실을 의논한 상대로는 시댁식구와 친구가 각각 5.6%였고, 친정식구 4.2%, 이웃사람 3.2%, 기타 1.4%, 상담소 0.5%로 나타나 전문적인 도움 요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폭행사실을 의논하지 않는 이유로는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10.6%, '기타' 4.6%,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남편이 체면 때문에'와 '의논상대가 마땅치 않아서'가 각각 1.9%, '타인과 의논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더 큰 폭력이 오기 때문에' 0.9%로 응답하여 주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폭행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고려에 대해 '그렇다' 24.1%, '아니다' 12.5%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이 남편의 폭행을 참고 살아온 이유로는 '자녀들 때문에' 19.9%,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 때문에' 6.0%, '기타' 5.6%, '이혼 후 대책이 없어서' 1.4%, '체면 때문에'와 '주위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각각 0.9%, '나의 잘못으로 맞을만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맞고 있는 상황만 넘기면 한동안 생활이

<Table 2> Actual condition toward domestic violence

(N=216)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The first time to experience of violence	Before marriage	2	0.9
	Within 1 year after marriage	23	10.6
	1 ~ 4 years after marriage	29	13.4
	5 ~ 9 years after marriage	20	9.3
	10 years later after marriage	10	4.6
	No answer	132	61.1
	Nothing	39	18.1

<Table 2> Actual condition toward domestic violence(continued)

(N=216)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Frequency of violence	1-2 time(s) in a week	5	2.3
	3-4 times in a month	4	1.9
	3-4 times in a half year	8	3.7
	1-2 times in a year	16	7.4
	1-2 times after marriage	39	18.1
	Others	24	11.1
	No answer	120	55.6
A level of violence*	Slap on the cheek	18	7.5
	Push the body	48	19.9
	Violence with an offensive weapon(belt, saw, knife etc.)	4	1.7
	Hit continuously and indiscriminately	4	1.7
	Hit, kick or press with his own bodies	13	5.4
	Others	35	14.5
	No answer	119	49.3
	A reason of violence in a view of husband*	For no attention to his words	28
For impolite to his parents		10	4.1
For unsuitable education to children		6	2.5
For lack of ability in a households		9	3.7
For interference to husband's matters		20	8.3
For a groundless doubt of wife's faithfulness		7	2.9
Others		35	14.4
No answer		127	52.5
A reason of violence in a view of wife*	For an inferiority complex	25	9.1
	To release his stresses in his company or social relationship	28	10.2
	Due to discover his debauchery or adultery	8	2.9
	Trump up charges on the slightest pretext getting drunk	34	12.4
	For a mental disease or an emotional disorder	11	4.0
	For a refusal of sexual relation	4	1.5
	For a disobedient to her husband	12	4.4
	For a groundless doubt of wife's faithfulness	5	1.8
	Others	24	8.8
	No answer	123	44.9
Violence in getting drunken	Yes	31	14.4
	No	68	31.5
	No relation with	15	6.9
	No answer	102	47.2
A requisition of compulsive sexual relation after violence	Always	4	1.9
	Sometimes	23	10.6
	Never	85	39.4
	No answer	104	48.1
Countermeasure for the violence of husband	Do the violence against husband's violence	33	15.3
	Avoid the place unconditionally	26	12.0
	Ask to help to others because can not solve by myself	5	2.3
	Endure by myself until finishing the violence	7	3.2
	Others	23	10.6
	No answer	122	56.5
To whom of requisition to help	Neighborhood	10	4.6
	Any person who are in the place to violate	7	3.2
	Police	5	2.3
	Families of maiden home	11	5.1
	Families in law	14	6.5
	Others	25	11.6
	No answer	144	66.7

<Table 2> Actual condition toward domestic violence(continued)

(N=216)

Categories	Classification	f	%
Have discussed about husband's violence with others	Yes	36	16.7
	No	42	19.4
	No answer	138	63.9
The first time to discuss about husband's violence	The first violence	14	6.5
	After repeated violence	24	11.1
	No answer	178	82.4
Discuss about husband's violence with	Friends	12	5.6
	Neighborhood	7	3.2
	Families in law	12	5.6
	Families of maiden home	9	4.2
	Counsellor	1	0.5
	Others	3	1.4
	No answer	172	79.6
The reasons without any discussion for husband's violence with others	Shame or hurt of self-esteem	23	10.6
	Can not expect to get help	4	1.9
	To put a husband out of countenance	4	1.9
	To dissatisfy the counter partner of discussion	4	1.9
	To be afraid of another more serious violence if husband knows that I discussed with others	2	0.9
	Others	10	4.6
	No answer	169	78.2
	Have considered a divorce due to husband's violence	Yes	52
No	27	12.5	
The reason to endure for husband's violences	No answer	137	63.4
	The hope getting better in advance	13	6.0
	For the children	43	19.9
	To save appearances	2	0.9
	To think that I ought to violate by my mistakes	1	0.5
	To get married against neighbor's advices	2	0.9
	There is no where to go and how to do after divorce	3	1.4
	Over the situation to violate there will be in peace and quiet life for some time	1	0.5
	Dissuade from fighting by neighbor	1	0.5
	Others	12	5.6
No answer	138	63.9	

* multiple response

평온해지므로'와 '주위의 만류 때문에'가 각각 0.5%로 나타났다<Table 2>.

3. 가정폭력의 수준

가정폭력의 전체 평균점수는 .36±.72점으로 이었고, 하위영

역별 점수를 산출한 결과 1위 심리적 폭력 .68±1.02점, 2위 성적 폭력 .36±.90점, 3위 신체적 폭력 .31±.77점, 4위 상해 .19±.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4.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분석

<Table 3> Degree of domestic violence

Domain	Mean±SD	Min	Max	Rank
Physical assault	.31±.77	0	5.3	3
Psychological aggression	.68±1.02	0	6.9	1
Sexual coercion	.36±.90	0	6.5	2
Injury	.19±.62	0	4.5	4
Total	.36±.72			

연구대상자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하였다. 가정폭력 경험은 하위영역인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및 상해에 해당하는 각 문항에 따라 처벌에 대한 견해의 하위영역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이혼 고려, 민사책임 고려, 보호 처분 고려, 형사소송 고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신체적 폭력경험 유· '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견해
교차분석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가정폭력경험 유· '에 따라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교차분석 한 결과 '나를 벽 쪽으로 세계 밀어부쳤다'라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인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나에게 던졌다'(x²=11.3, p<.05), '나의 팔을 비틀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x²=13.0, p<.05). '나를 밀었다'(x²=14.0, p<.01), '나를 꼭 움켜잡았다'(x²=16.8, p<.01), '나의 뺨을 때렸다'(x²=22.3, p<.0001), '나에게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였다'(x²=10.1, p<.05),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를 쳤다'(x²=14.7, p<.01), '나의 목을 졸랐다'(x²= 19.5, p<.01), '손으로 내 몸을 때렸다'(x²=17.5, p<.01), '뜨거운 물이나 불로 나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x²=9.9, p<.05), '나를 발로 찼다'(x²=17.4, p<.01)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집단은 가벼운 폭력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보호처분, 형사소송,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민사책임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한 폭력(흉기를 사용하거나 화상을 입힘)을 당할 때에는 형사소송, 이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보호처분, 민사책임의 순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은 집단은 가벼운 폭

력에 대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보호처분, 이혼, 형사소송, 민사책임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한 폭력(흉기를 사용하거나 화상을 입힘)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이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보호처분, 민사책임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집단이 폭력을 당하지 않은 집단보다 대체로 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형사소송 고려에 대한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폭력을 경험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4>.

2) 심리적 폭력경험 유· '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견해
교차분석

심리적 폭력경험 유· '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교차분석 한 결과 '남편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욕을 했다'(x²=21.7, p<.0001), '나에게 고통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x²=19.3, p<.001), '남편은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았다'(x²=26.8, p<.001), '나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했다'(x²=15.3, p<.01), '남편이 나에게 똥똥하다거나 못생겼다고 말했다'(x²=15.4, p<.01), '나의 소유

<Table 4> Opinion to punishment by experience of physical assault

(N=216)

Item	Experience of violence	Intention of punishment					χ ²
		No punishment	Divorce	Civil liability	Protection disposal	Criminal action	
		n(%)	n(%)	n(%)	n(%)	n(%)	
He threw something at me that could hurt	No	53(38.4)	23(16.7)	12(8.7)	28(20.2)	22(16.0)	11.3*
	Yes	15(19.2)	21(26.9)	8(10.2)	19(24.3)	15(19.2)	
He twisted my arm or hair	No	55(39.9)	25(18.1)	7(5.0)	30(21.7)	21(15.2)	13.0*
	Yes	16(20.5)	18(23.0)	9(11.5)	22(28.2)	13(16.7)	
He pushed or shoved me	No	68(49.3)	15(10.9)	13(9.4)	35(25.3)	7(5.1)	14.0**
	Yes	21(26.9)	18(23.1)	7(8.9)	27(34.6)	5(6.4)	
He grabbed me	No	68(49.3)	12(8.7)	18(13.1)	34(24.6)	6(4.4)	16.8**
	Yes	20(25.7)	15(19.2)	9(11.5)	30(38.5)	4(5.1)	
He slapped me	No	60(43.5)	14(10.2)	17(12.3)	38(27.5)	9(6.5)	22.3***
	Yes	21(26.9)	25(32.1)	5(6.4)	19(24.4)	8(10.3)	
He used a knife or gun on me	No	46(33.3)	37(26.8)	2(1.5)	4(2.9)	49(35.5)	10.1*
	Yes	12(15.4)	22(28.2)	5(6.4)	5(6.4)	34(43.6)	
He punched or hit me with something that could hurt	No	57(41.3)	26(18.8)	8(5.8)	24(17.4)	23(16.7)	14.7**
	Yes	12(15.4)	26(33.3)	4(5.1)	20(25.7)	16(20.5)	
He choked me	No	45(32.6)	42(30.4)	3(2.2)	11(8.0)	37(26.8)	19.5**
	Yes	10(12.8)	30(38.5)	8(10.3)	11(14.1)	19(24.4)	
He slammed me against a wall	No	64(46.4)	18(13.1)	20(14.5)	29(21.0)	7(5.1)	7.7
	Yes	24(30.8)	17(21.8)	12(15.4)	22(28.2)	3(3.9)	
He beat up me	No	57(41.3)	34(24.6)	17(12.3)	16(11.6)	14(10.2)	17.5**
	Yes	16(20.5)	18(23.1)	6(7.7)	18(23.1)	20(25.6)	
He burned or scalded me on purpose	No	45(32.6)	34(24.6)	5(3.6)	7(5.1)	47(34.1)	9.9*
	Yes	12(15.4)	20(25.6)	4(5.1)	9(11.5)	33(42.3)	
He kicked me	No	57(41.3)	27(19.6)	20(14.5)	24(17.4)	10(7.3)	17.4**
	Yes	17(21.8)	22(28.2)	7(8.9)	13(16.7)	19(24.4)	

*p<.05 **p<.01 ***p<.001

물을 부수었다'(x²=14.5, p<.01),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x²=14.7, p<.01),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했다'(x²=9.9, p<.05)의 모든 문항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심리적 폭력을 당한 집단은 이혼, 보호처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민사책임, 형사소송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보호처분, 이혼, 민사책임, 형사소송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다<Table 5>.

3) 성적 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견해 교차분석

성적 폭력경험 유·무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교차분석 한 결과 두 문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무력을 사용하지 않

음)(x²=11.1, p<.05)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처벌에 대한 견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형사소송 의도가 3.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성관계를 갖기 위해 나에게 무력(때리기, 붙잡기, 흉기사용 등)을 사용하였다'(x²=14.5, p<.01)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이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과 보호처분, 형사소송, 민사책임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이혼, 형사소송, 보호처분, 민사책임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보였다<Table 6>.

4) 상해경험 유·무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견해 교차분석

상해경험 유·무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교차분석 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싸움으로 인해 나는 뼈거나 타박상을 입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다'(x²=13.5, p<.01), '부부싸움으로 나는 그 다음날까지 몸

<Table 5> Opinion to punishment by experience of psychological aggression (N=216)

Item	Experience of violence	Intention of punishment					χ ²
		No punishment	Divorce	Civil liability	Protection disposal	Criminal action	
		n(%)	n(%)	n(%)	n(%)	n(%)	
He insulted or swore at me	No	59(42.8)	20(14.5)	17(12.3)	39(28.3)	3(2.2)	21.7***
	Yes	14(17.9)	24(30.8)	12(15.4)	22(28.2)	6(4.4)	
He shouted or yelled at me	No	66(47.8)	15(10.9)	14(10.2)	36(26.1)	7(5.1)	19.3***
	Yes	20(25.7)	24(30.8)	8(10.3)	23(29.5)	3(3.9)	
He stomped out of the room or house or yard during a disagreement	No	72(52.2)	8(5.8)	12(8.7)	43(31.2)	3(2.2)	26.8***
	Yes	20(25.7)	20(25.7)	9(6.5)	27(34.6)	2(2.6)	
He did something to spite me	No	65(47.1)	26(18.8)	10(7.3)	30(21.7)	7(5.1)	15.3**
	yes	19(24.4)	27(34.6)	10(12.8)	20(25.7)	2(2.6)	
He called me fat or ugly	no	69(50.0)	14(10.2)	17(12.3)	31(22.5)	7(5.1)	15.4**
	Yes	23(29.5)	20(25.7)	12(15.4)	18(23.1)	5(6.4)	
He destroyed something belonging	No	70(50.7)	16(11.6)	15(10.9)	27(19.6)	10(7.3)	14.5**
	Yes	20(25.7)	17(21.8)	16(20.5)	18(23.1)	7(8.9)	
He accused me of being a lousy lover	No	65(47.1)	27(19.6)	8(5.8)	31(22.5)	7(5.1)	14.7**
	Yes	20(25.7)	28(35.9)	8(10.3)	18(23.1)	4(5.1)	
He threatened to hit or throw something at me	No	58(42.0)	31(22.5)	8(10.3)	29(21.0)	12(8.7)	9.9*
	Yes	17(21.8)	20(25.6)	6(7.7)	26(33.3)	9(11.5)	

*p<.05 **p<.01 ***p<.001

<Table 6> Opinion to punishment by experience of sexual coercion (N=216)

Item	Experience of violence	Intention of punishment					χ ²
		No punishment	Divorce	Civil liability	Protection disposal	Criminal action	
		n(%)	n(%)	n(%)	n(%)	n(%)	
He insisted on sex when I did not want to (but did not use physical force)	No	66(47.8)	25(18.1)	7(5.1)	36(26.1)	4(2.9)	11.1*
	Yes	24(30.8)	21(26.9)	4(5.1)	20(25.7)	9(11.5)	
He used force(like hitting, holding down, or using a weapon)to make me have sex	No	51(36.9)	42(30.4)	4(2.9)	18(13.1)	23(16.7)	14.5**
	Yes	15(19.2)	26(33.3)	8(10.3)	16(20.5)	13(16.7)	

*p<.05 **p<.01

<Table 7> Opinion to punishment by experience of injury

(N=216)

Item	Experience of violence	Intention of punishment					χ^2
		No punishment	Divorce	Civil liability	Protection disposal	Criminal action	
		n(%)	n(%)	n(%)	n(%)	n(%)	
I had a sprain, bruise, or small cut because of a fight with my parter	No	55(39.9)	21(15.2)	11(7.9)	24(17.4)	27(19.6)	13.5**
	Yes	12(15.4)	22(28.2)	8(10.3)	20(25.7)	16(20.5)	
I felt physical pain that still hurt the next day because of a fight with my parter	No	60(43.5)	28(20.3)	11(7.9)	23(16.7)	16(11.6)	10.3*
	Yes	17(21.8)	20(25.7)	5(6.4)	23(29.5)	13(16.7)	
I passed out from being hit on the head by my parter in a fight	No	45(32.6)	36(26.1)	3(2.2)	16(11.6)	38(27.5)	9.8*
	Yes	13(16.7)	22(28.2)	3(3.9)	16(20.5)	24(30.8)	
I went to a doctor because of a fight with my partner	No	51(36.9)	35(25.4)	5(3.6)	15(10.9)	32(23.2)	11.9*
	Yes	14(17.9)	26(33.3)	8(10.3)	11(14.1)	19(24.4)	
I needed to see a doctor because of a fight with my partner, but I didn't	No	58(42.0)	34(24.6)	6(4.4)	24(17.4)	16(11.6)	20.3***
	Yes	14(17.9)	24(30.8)	13(16.7)	19(24.4)	8(10.3)	
I had a broken bone from a fight with my partner	No	53(38.4)	23(16.7)	9(6.5)	12(8.7)	41(29.7)	11.5*
	Yes	13(16.7)	20(25.7)	7(8.9)	10(12.8)	28(35.9)	

*p<.05 **p<.01 ***p<.001

이 아팠다'(x²=10.3, p<.05), '다툼 중에 남편이 나의 머리를 때려 내가 기절했다'(x²=9.8, p<.05), '부부싸움에서 다쳐서 나는 병원에 갔다'(x²=11.9, p<.05), '부부싸움 때문에 나는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아갈 정도였지만 가지 않았다'(x²=20.3, p<.0001), '부부싸움으로 내 뼈가 부러졌다'(x²=11.5, p<.05)로 나타났다. 즉, 상해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이혼, 보호처분과 형사소송, 민사책임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상해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가벼운 상해 시에는 이혼이나 보호처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과 형사처벌, 민사책임의 순으로 고려하였고 심한 상해(뼈가 부러짐, 머리를 때려 기절함)시에는 형사소송, 이혼, 보호처분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음, 민사책임의 순으로 처벌에 대한 견해를 나타냈다<Table 7>

결론적으로 가정폭력 경험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분석해 본 결과 신체적 폭력문항 중 한 문항을 제외한 거의 전 문항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처벌의사가 강력한 반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폭력을 당하지 않은 집단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논 의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점수는 .36점으로 대상자

의 36%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선행연구(Kim, Cho, Kim, & Kim, 2002)에서 제시한 7.4~ 3.4%의 범위 안에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의 범위가 비교적 넓게 제시된 것은 연구자에 따라 폭력의 측정도구 및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2005)의 조사에서 나타난 45.9%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의 은폐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4.2%는 일주에 한번 이상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8.8%는 무차별적으로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이 응답한 폭력의 이유와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폭력의 이유는 상이하였다. KIC(1992)에서 아내학대의 발생 원인으로 남편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불복종, 시덕과의 관계상 문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사건건 트집잡음, 특별한 이유 없이 술버릇, 아내의 품행이 좋지 않음, 아내로 인해 일이 안 풀림 등의 순서로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가정폭력은 유사한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와 가정폭력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자들에게서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력빈도가 31.5%인 반면, 음주상태에서의 폭력빈도는 14.4%로 나타나 음주상태와 폭력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배우자의 음주는 폭력행동에서 가장 보편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신체적 폭력과 더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Brecklin, 2002). Rhee(1997)도 한인 이민가정에서 발생하는 별거나 이혼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가 음주와 관련된 폭력이라고 보고한 바 있어 가정폭력과 음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대상자 중 12.5%는 가정폭력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당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Kim(1996)은 가정폭력 후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이들 부부가 문제해결의 방책으로 보며, 이러한 성관계가 여성을 비하하는 폭력의 마지막 단계로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통제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Kong(1999)는 가정폭력 시 피해여성의 대응방식으로 크게 소극적인 방식과 적극적인 방식으로 분류하고 소극적인 방식에는 달래기와 피하기, 적극적인 방식에는 대항하기와 집 나가기가 있으며 피해여성들이 복합된 상태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의 대응방식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무조건 자리를 피하고 본다’와 ‘폭력이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나도 함께 폭력을 행사 한다’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주위의 도움을 청한다’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Kong(1999)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Kim(1988)의 연구에서 구타당하는 아내가 ‘자녀가 불쌍하다’, ‘친정가문에 먹칠을 한다’, ‘경제적으로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 ‘이혼은 죄악이다’, ‘때리지 않을 때는 남편이 잘 해 준다’, ‘이혼을 하면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매 맞는 아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로는 구타에 대한 수치심, 가문의 망신도 문제가 되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정, 경찰, 법, 병원, 교회 등에서 여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다며 참고 용서해 주고 살도록 화해를 시키려드는 잘못된 조언들 그리고 보호를 받는 방법의 무지 등을 들며, 가정폭력 후 피해 여성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폭력이 반복적이고 장기화되며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연구대상자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의 영역별 순위는 심리적, 성적, 신체적, 상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에게 CTS2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했던 폭력을 기억하여 응답하도록 한 Kwon(1999)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의 순과 일치한다. 단, Kwon(1999)의 연구에서는 성적폭력의 문항을 제외시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연구는 성적 폭력의 일부 문항을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성적 폭력에 대한 순위가 나타난 점만 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Sohn(1997)의 연구에서 아내학대의 순서가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상해의 순서로 발생하는 것과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라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보면 폭력을 당한 집단이 폭력을 당하지 않은 집단보다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가 많이 나타났으나, 아무리 심각한 신체적 폭력이나 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도 폭력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혹은 폭력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가해자가 아내구타가 폭력범죄가 아니라 사적인 부부관계이고 아내는 개인의 소유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피해자인 여성 역시 아내구타를 폭력범죄가 아닌 사적인 부부관계로 보고 자신이 매 맞는 것은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 때문이라고 간주하여 신고를 못하며, 일부 피해여성이 의식을 갖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이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로 인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법보다는 가정일이나 둘이 잘 해결하라는 식의 태도 때문에 피해 여성에게 다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Byun, Won 및 Choi(1993)의 설명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혼 고려는 대부분의 연구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쉼터 피해자에 대한 상담기록(208사례) 분석결과, 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이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였다. 이들은 폭력관계 초기에는 “남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학대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악화되면서 “남편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며, 남편의 폭력은 고쳐질 수 없다”로 생각이 바뀌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면서 이혼을 원하게 된다 (Kim, 2001). 본 연구대상자들은 심리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과 같이 상대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신체적 폭력에 비해 폭력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처분 고려에 대한 견해가 높았다. 그러나 수감명령과 보호관찰 처분에 의한 가해자의 교정은 가해자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개별화된 교정과 치료가 어렵고 국가행정기관(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한 단기적(6개월)개입이므로 그 효과를 낙관하기 어려우므로(Park & Ji, 2004) 실질적인 가정폭력의 교화 및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정폭력이 아주 심각하다고 여길 때에만 본 연구대상자중 1/3이 형사소송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소송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Holye와 Sanders(2000)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배우자가 지배하는 통제 행위망 속에 있기 때문에, 아예 신고나 법적 처벌을 시도조차 못한다. 이처럼 학대관계 속에 “붙잡혀” 버린 피해여성들은 스스로 폭력관계를 종식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도 못하고 배우자 통제행위의 결과로 고립되는 경향이 많아서 사회적 원조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상해를 발견하여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실제로 제3자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침묵된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 특히 형사소송을 고려 할 정도의 가정폭력 피해

자라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경찰신고가 도움 찾기의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발생 시에는 응급구조가 가능하도록 보다 안전한 쉼터와 정보제공 및 위기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양성평등으로의 의식전환 및 정책전환, 법적·제도적 보완, 여러 가지 지역사회 협의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 및 법적·의료적·사회적 지원 체제를 가동시키고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시의 기혼여성 21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실태와 가정폭력에 따른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확인한 결과 약 36% 정도의 기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폭력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배우자 처벌에 대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형사 소송을 고려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가정폭력 발생률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전국조사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 가정폭력의 문제는 아직도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하는 임과위먼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사회적 시스템 개발과 운용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 가해남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후관리와 함께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erry, D. B. (2000). *The domestic violence source book*. LA: Lowell House.
- Brecklin, L. R. (2002). The role of perpetrator alcohol use in the injury outcomes of intimate assaults. *J Fam Violence*, 17(3), 185-197.
- Byun, H. S., Won, Y. A., & Choi, E. Y. (1993).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Giles-Sims, J. (1983). *Wife battering: a system theory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Gondolf, E. W. (2002). *Battered intervention system*. CA: Sage Publication.
- Holye, C., & Sanders, A. (2000).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from victim choice to victim empowerment?. *Br J Criminol*, 40(1), 14-36.
- Huh, S. Y., & Huh, N. S. (2003).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olice officer's intervening attitudes to domestic violence-centering around wide abuse. *Korean J Fam Welf*, 11, 103-123.
- Jang, S. M., & Kim, J. H. (2005). A study on battered women's experience in calling the police. *Korean J Fam Welf*, 16, 127-160.
- Kang, Y. H., Oh, W. H., Lee, S. S., Chung, J. S., Cho, Z. H., & Hwang, K. A. (2003). *Law dictionary*. Seoul: Chchung-lim press.
- Kim, B. J. (2002). Political action towards domestic violence. *Korean Assoc Police Sci Rev*, 4, 223-245.
- Kim, E. J. (2001).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Seoul: Korean Institution of Criminology.
- Kim, G. I. (1988). *Domestic violence-actual circumstance and countermeasures*. Seoul: Tamgu press.
- Kim, H. S. (1996). *A study on continuation process toward for wife beating*. Paper presented at the 13th scientific meetings of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Seoul.
- Kim, J. Y. (1998). Spousal abuse and social class in Korean national family violence survey. *Korean J Soc Welf*, 35(8), 133-155.
- Kim, S. K., Cho, A. J., Kim, Y. K., & Kim, Y. S. (2002). *Reinforcement plan of function and role in domestic and sexual consultation offices and shelters in Korean*.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C, Korean Institution of Criminology. (1992).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Seoul: Korean Institution of Criminology.
- Kong, M. H. (1999). *Patriarchal terrorism in Korea -Batter's intervention program-*. Seoul: Hawoo press.
- Kwon, B. S. (1999).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ttitudes of the family violence for its prevention. *Korean J Fam Welf*, 3, 9-39.
- Ministry of Gender and Family (2005). *Domestic violence in Korean national Survey*.
- Park, K. B., & Ji, H. K. (2004). Legal-systematic alternative to domestic violence: Therapeutic jurisprudence. *Korean J Psychol Soc Issue*, 10, 69-86.
- Rhee, S. (1997). Domestic violence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Korean J Soc Welf*, 14(1), 63-77.
- Sohn, J. Y. (1997). A study about the property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on Korean couples-focused on husband's conflict tactics and wife abuse behaviors-. *Korean J Fam Relation*, 2, 51-87.
- Suh, G. S., & Kim, U. H. (2002). The police force's countermeasure to domestic violence: reality and problems. *Korean Criminal Policy*, 14(1), 75-104.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 Fam Issue*, 17(3), 283-316.